

## 실험동물자원 관리 규정

제정 1986.12.3      개정 1991. 4. 1      개정 2014. 7.15  
 개정 1989. 5.29      개정 1999. 3.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실험의 승인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반·출입, 사육관리 및 실험종료후의 처치 등 실험동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항공과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의 동물실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 한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연구소 등의 실험동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험동물관련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수의학, 치의학, 약학 및 생물학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험동물시설에서 동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실험동물시설관리자”라 함은 실험동물 또는 실험동물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3. “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함은 실험동물 의학 또는 실험동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를 말한다.
4. “실험동물사육기술자”라 함은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동물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5. “실험동물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 및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9.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7.15)

③ 위원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1)

④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 시설의 적합성 및 안전성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에는 연구기획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8.9.1)(개정: 2014.7.15)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9.1)

제5조(실험동물자원 관리부서) ①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각 실험동물시설의 행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연구센터를 관리부서로 한다. (개정: 2008. 9.1)

② 관리부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동물실험의 승인) ① 동물실험실시자는 관리부서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동물실험을 승인한 경우에는 동물실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 승인에 관련한 문서는 간사부서에서 보관하며, 승인번호가 부여된 동물실험에 관련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7조(실험동물의 공급 등) ① 실험동물의 공급 및 실험동물시설에의 반입은 동물 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반출·입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실험동물 공급처 및 공급일은 실험동물반출·입신청서에 동물실험실시자가 작성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동물실험실시자는 대학 내에 설치된 실험동물시설에만 동물을 반입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시설에도 반입코자 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반입된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실시자와 실험동물사육기술자가 동시에 검역을 실시하여 활용여부를 판단하되,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1차 구두 보고하고 해당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험동물의 반입은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운반되어야 한다.

⑥ 동물실험실시자와 실험동물시설관리자는 반입된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의 환기, 조명, 소음, 온도 및 습도 등을 조절하고 사료, 음용수 및 깔개 등을 선택해야 하며 동물실험이 적절하도록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실험동물의 사용) ① 동물실험실시자와 실험동물사육기술자는 동물의 성장, 발육상태, 전신상태, 이송기록 및 질병 유무 등을 기록해야 하며, 수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② 동물실험실시자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다르게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실험동물사육기술자는 동물실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여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사육기술자는 실험동물의 이동사항 발생시 그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에 1차 구두 보고하고 해당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한

다.

제9조(동물실험의 종료 등) ① 동물실험실시자는 실험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단할 때에는 실험동물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한 최단시간 이내에 의식을 소실케 하고 신속하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안락사시켜야 한다.

② 동물실험실시자는 실험 중, 실험 중단 또는 실험 종료에 따른 사체 발생에 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체를 보관 또는 검사하고 외부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④ 동물실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물실험실시자 또는 실험동물시설관리자는 실험동물의 반출·입에 대한 모든 기록 사항을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동물실험실시자는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특수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험) ① 방사선동위원소, 병원체, 재조합 DNA, 발암물질, 변이원성 물질 및 기타 안전성 미확인물질 등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 동물실험실시자는 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등 별도의 관리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실험실시자는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오염과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육 및 실험 구역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동물실험실시자는 유전자 도입 동물을 다루는 동물실험에 있어서는 동물실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험동물시설과 사육실 등에서 해당 동물의 습성을 숙지하여 도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동물실험실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실험동물자원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